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체크리스트

동 확인서는 사업장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108조(보고 등) 및 동 법 제109조(조사 등)에 의거 조사하는 것으로서, 반드시 사실대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체명		대 표 자	
소 재 지		업 종	
피보험자수	2017년 12월말: 명	사업장 관리번호	
전화번호		담 당 자	

■ 사업장 확인	예	아니오
1. 1년 이내 본 사업장(사업주 포함)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(사업주 포함)에서 이직한 자를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		
2. 국가,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(인건비 등)을 중복해서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다. ※ 단,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지원 가능		
3. 장려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는 신규 채용된 청년을 포함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(피보험자수)가 증가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		
4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부정수급 처분(행정적 · 사법적 제재)을 받음에 이의가 없습니다.		

2018년 월 일

사업주: (서명 또는 직인)

■ 근로자 확인	예	아니오
1.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닙니다.		
2. 입사 당시 재학생, 휴학생,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아닙니다. (졸업예정자 채용인 경우,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)		
3.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.		
4.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. ※ 연장근로,식대,교통비 등 제외, (`18년)주40시간 기준 월 1,573,770원 이상		

2018년 월 일

청년1(성명: , 입사일: 2018. . .) (서명)

청년2(성명: , 입사일: 2018. . .) (서명)

청년3(성명: , 입사일: 2018. . .) (서명)